

교육과학연구소 규정

1997. 3. 7. 제정

2021. 1. 1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① 연구소는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육학 이론 및 실체에 관한 연구 <개정 2017.11.16.>
2. 영·유아교육 이론 및 실체에 관한 연구 <개정 2017.11.16.>
3. 초등교육이론 및 실체에 관한 연구 <개정 2017.11.16.>
4. 교육공학이론 및 실체에 관한 연구 <개정 2017.11.16.>
5. 기독교교육 이론 및 실체에 관한 연구 <개정 2017.11.16.>
6.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
7. 학술연구지 발간
8. 국내외 학회와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
9. 교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
10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본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기관 및 기타 본교 부속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공동 연구를 도모한다.

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 교육연구부, 유아교육연구부, 초등교육연구부, 교육공학연구부, 기독교교육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. <개정 2017.11.16.>

② 교육연구부는 교육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16.>

③ 유아교육연구부는 영·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16.>

④ 초등교육연구부는 초등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16.>

⑤ 교육공학연구부는 교육공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16.>

⑥ 기독교교육연구부는 기독교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16.>

⑦ 행정실은 연구자료의 수집 및 관리,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,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부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11.16.>

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11.16., 2020.12.10.>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9조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<개정 2010.7.7.>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7.11.16., 2021.1.16.>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편집위원회) ①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②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
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
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교육학, 유아교육, 초등교육, 교육공학, 기독교교육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심의하고 검증한다.

⑥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16.]

제12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<개정 2010.7.7.>

제13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,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7.11.16., 2018.6.20.>

부 칙(1997. 3. 7. 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인간발달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2002. 7. 19.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1. 1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육과학연구소 규정

부 칙(2021. 1. 16. 개정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